

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

의안 번호	제 481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2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근거

- 지방자치법 175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

2. 주요내용

- 가. 정기회의·임시회의 개최를 윤번제에서 회장도시 및 희망도시로 변경 (규약 제8조)
 - 1) 협의회 최초 구성도시 중 일부 도시 탈퇴 및 신규 도시 가입에 따른 윤번개최 순번 수시 변동
 - 2) 회장도시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희망도시 있는 경우 개최 가능토록 규약변경

3. 추진경과

- 가. 2024년 상반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실무회의 안건 논의 및 참석자 현장 투표(2024. 3. 14.)
- 나. 정기회의 시 안건 의결(2024. 10. 15.)
 - 1) 회장도시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희망도시 있는 경우 개최 가능

4. 첨부사항

-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

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

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‘회원별 윤번제로 개최하며’를 ‘당해연도 회장도시에서 개최한다. 단, 개최 희망도시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개최지를 달리할 수 있으며’로 한다.

〈신·구조문대비표〉

현 행	개 정
<p>제 8 조 (회 의)</p> <p>협의회는 정기회의,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<u>회원별 윤번제로 개최하며</u>, 개최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</p> <p>① 정기회의: 연 2회 이하</p> <p>② 임시회의: 회의소집 안건을 감안 회장단이 소집</p>	<p>제 8 조 (회 의)</p> <p>협의회는 정기회의,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<u>당해연도 회장도시에서 개최한다. 단, 개최 희망도시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개최지를 달리할 수 있으며</u> 개최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</p> <p>① 정기회의: 연 2회 이하</p> <p>② 임시회의: 회의소집 안건을 감안 회장단이 소집</p>